

**2024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 교	육	부	소관
☐ 국	가	교	육
	위	원	회
			소관

2025. 8.

교 육 위 원 회

◆ 목 차 ◆

I. 소관부처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II. 심사경과	3
III.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4
IV. 대체토론 요지	5
V.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5
VI. 심사결과	6
VII. 소수의견의 요지	6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6
IX. 시정요구사항	7
X. 부대의견	8
[붙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9

2024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2025. 8.
교 육 위 원 회

I. 소관부처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교육부 소관

1.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해당 없음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5. 30.

나. 회부일자 : 2025.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1. 교육부 소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 8. 2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회부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 8. 26.)

상정 · 심사

제42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 8. 27.)

의결(원안)

2.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해당 없음

Ⅲ.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1.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개요

□ 2024년도 예비비 배정액은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의 2,102억 5,4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함.

□ 주요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육시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1,770 억원을 배정받음.
-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부족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 원을 위하여 332억 5,400만원을 배정받음.

< 2024년도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 예비비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액	배정 사유
영유아보육료 지원	177,000	'24년 보육시설 이용자 수 증가(+39천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33,254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부족
계	210,254	

2. 전문위원 검토보고(붙임 참고)

IV. 대체토론 요지

가. 교육부 소관

- 해당 없음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해당 없음

V.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가. 교육부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해당 없음

VI. 심사결과

가. 교육부 소관

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함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해당 없음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IX. 시정요구사항

□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예비비 시정요구(안)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1	영유아보육료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시 대비 실제 지원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을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함 - 예비비 편성액은 2023년도(지원대상 4만 9,000명 초과) 1,383억원, 2024년도(지원대상 3만 9,000명 초과) 1,770억원임 ○ 예비비는 당해연도 부족분뿐 아니라 전년도 미지급금 총당에도 사용되었으나, 2024년 예비비 요구서에는 당해연도 부족분만 기재해 사유·금액·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2023년도 미지급금은 1,703억원(2024년 예산으로 상계), 2024년도 미지급금은 774억원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상인원 추계 방법 현실화 등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동 사업에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비비 요구 시에도 실제 총당 내역을 반영한 산출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작성·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2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법령에 따른 경직성 경비로 사전에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 ※ (2022년) 179억원 전용, (2023년) 311억 6,800만원 전용, 292억 5,400만원 예비비 편성, (2024년) 212억 9,400만원 전용, 332억 5,400만원 예비비 편성 - 예산 전용과 예비비 편성이 늦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예산 편성 시 적정 국고보조율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대상 인원 및 단가 산출에 주의를 다하는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동 사업에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X. 부대의견

○ 없 음

[붙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2) 영유아보육료 지원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 활동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 구체적으로 내역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래에 0~2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연장보육료 지원, 미지급금 지원,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보육료 사업운영관리의 내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 문의: 02-6788-5192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액은 2조 6,73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1,770억원을 예비비로 배정하여, 예산현액은 2조 8,501억원으로 전액 집행됨.

< 2024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영유아보육료 지원	2,673,100	177,000	2,850,100	2,850,100	-	-	100
○ 0~2세 보육료	2,400,235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400,235	-	-	-	-	-	100
○ 장애아 보육료	71,109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71,109	-	-	-	-	-	100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28,309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8,309	-	-	-	-	-	100
○ 연장보육료 지원	77,485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77,485	-	-	-	-	-	100
○ 미지급금 지원	16,300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6,300	-	-	-	-	-	100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79,612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79,612	-	-	-	-	-	100
○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	50	-	-	-	-	-	100
-민간경상보조(320-01)	50	-	-	-	-	-	100

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내역사업 내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 내내역사업별 집행액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음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영유아보육료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 동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²⁾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2세)에 대하여, 기관보육료 및 부모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³⁾

< 2024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

(월 기준, 단위: 천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부모보육료	540	475	394	587
기관보육료	629	342	232	686
계	1,169	817	626	1,273

주: (부모보육료)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 부모의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 ※ 재원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기관보육료)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대해 0~2세, 장애아보육시 지원 ※ 1일 이상 출석시 전액 지원

자료: 교육부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 65%(차등보조율 ± 10%)임.

□ 2024년도 예산액은 2조 6,731억원이고, '24년도 보육시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 배정('24.10.2.)을 통해 1,770억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2조 8,501억원이며,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 2024년도 0~2세 보육료 지원 예산 산출내역 >

○ 0~2세 보육료 : 2,400,235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2,400,235백만원

가. ' 23.1~5월 출생아 수 반영 6월 이후부터 중위추계 반영

· (0세반) $(65,755 \times 629\text{천원} + 3,511 \times 540\text{천원} + 70,802 \times 40\text{천원}) \times 12 \times 69.4\%$

· (1세반) $(132,196 \times 342\text{천원} + 148,036 \times 475\text{천원}) \times 12 \times 69.4\%$

· (2세반) $(151,429 \times 232\text{천원} + 232,145 \times 394\text{천원}) \times 12 \times 69.4\%$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0~2세반 아동 소 계총

- (지원인원) ('24) 520천명

*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아동 수 감소(전년 대비 △1.9%)

- (지원단가) 기관보육료 5.0%, 부모보육료 5.0% 인상

- (국고보조율) ('24) 69.4%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

구분		보육아동수(명)		보육료 지원단가(천원)	
		기관보육료 지원 (인건비 미지원 시설)	부모보육료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단가)	부모보육료 (지원단가)
0세반	'24년생	9,752	12,940 *부모급여 예산	629	-
	'23년생	53,357	70,802	629	40**
	'22년생	2,646	3,511	629	540
1세반	'22년생	34,620	52,524 *부모급여 예산	342	-
	'21년생	97,576	148,036	342	475
2세반	'21년생	151,429	232,145	232	394

※ 0~2세 보육료는 기관보육료(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원) 및 부모보육료(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바우처 지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률을 반영하여 예산 산출

* 부모급여 확대에 따라 만 0·1세 부모보육료는 부모급여 지원 예산에 반영

** 0세반에 재원하는 만 1세의 경우 보육료(54만원)가 부모급여(50만원)를 초과하므로, 50만원은 부모급여에 편성하고 차액인 4만원을 영유아보육료에 편성하여 지원

자료: 교육부

□ 구체적으로 2024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의 ‘0~2세 보육료’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출생아 수 및 6월 이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값에 따른 0~2세 영아 수에 월별 보육료 이용률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인원을 월평균 52만명으로 산출하고, 보육료 지원단가에 평균 국고보조율 69.4%를 기준으로 최종 예산을 산출함.

□ 그런데, 2024년도 8월까지 보육시설 이용 영아의 수가 이미 예산안 산출 시 예상인원인 52만명의 7.5%에 해당하는 3만 9,000명을 초과한 55만 9,000명에 달함에 따라, 교육부는 보육료 예산 부족을 사유로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24.9.30.)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음.⁴⁾

□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육시설 이용 영아수가 증가한 것은 ‘어린이집

4)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조,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概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 2024년도 예비비 배정 일정(자료: 교육부) >

- (3~9월) 월별 부족액 추계, 부내 이·전용 가능 예산 파악 및 기재부 실무 협의
- (9.30.) 제42회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비비 대통령 재가
- (10.2.) 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목적예비비 배정 통보(기재부→교육부)
- (10.2.) 변경내시 통보 및 지방비 편성 현황 제출 요청(교육부→시·도)

이용률’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2022년도 어린이집 월별 이용률을 활용하여 보육료 지원 인원을 추계하였는데, 코로나-19의 감염상황 완화로 실제 어린이집 연령반별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함.

< 어린이집 연령반별 이용률 비교 >

연도	예산서상 이용률(n-2년) (A)			실제 이용률(n년) (B)				이용률 차이 (B-A)		
	0세반	1세반	2세반	0세반	1세반	2세반	평균	0세반	1세반	2세반
2020	16.2%	74.5%	86.3%	17.0%	74.6%	88.9%	60.2%	0.80%	0.10%	2.60%
2021	16.6%	75.3%	90.1%	18.7%	76.3%	89.4%	61.5%	2.10%	1.00%	△0.7%
2022	17.0%	74.6%	88.9%	21.1%	80.4%	91.8%	64.4%	4.10%	5.80%	2.90%
2023	18.7%	76.3%	89.4%	22.4%	85.0%	90.9%	66.1%	3.70%	8.70%	1.50%
2024	21.1%	80.4%	91.8%	22.9%	85.7%	91.5%	66.7%	1.80%	5.30%	△0.3%

자료: 교육부

□ 그러나, 예산편성 시점에 차년도 ‘어린이집 이용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5년간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은 2020년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점인 2023년도에도 전년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경향’을 반영한 대상인원 추계 현실화를 통해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아울러, 동 사업은 2023년도에도 예산 편성 대비 지원 영아 수가 4

만 9,000명 증가하였음을 사유로 예비비를 1,383억원 편성하여 집행한 바 있음.

한편,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5)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상인원 추계 방법 현실화 등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동 사업에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에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2)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성과 관리 필요

-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는 수요 대비 부족한 어린이집 내 영아반 개설(유지) 유인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3.3.28)에서 제안되어 2024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었음.

구체적으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⁶⁾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임.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지원기준 >

반구분	정원기준	지원반	지원인원	추가지원 단가
0세반 (0·1세혼합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현원 2명) 629천원
1세반 (1·2세혼합반)	5명	현원 3명, 4명인 반 중 1개반	1~2명	(현원 3명) 684천원 (현원 4명) 342천원
2세반 (2·3세혼합반)	7명	현원 4명, 5명, 6명인 반 중 1개반	1~3명	(현원 4명) 696천원 (현원 5명) 464천원 (현원 6명) 232천원

* 지원단가(기관보육료): 0세(0·1세혼합반) 629천원, 1세(1·2세혼합반) 342천원,
2세(2·3세혼합반) 232천원

** 어린이집 1개소당 0세반(0·1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1세반(1·2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2세반(2·3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지원

자료: 교육부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이 있음(교육부 지침,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 368)

- 동 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 기준으로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의 영아가 채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의 임금 지급도 곤란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영아반 정원 미충족으로 인한 부족한 보육료 수입을 인센티브(보조금)를 통해 보전함으로써 어린이집 내 영아반 개설(유지)에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기관 이용을 원하는 영아가 언제라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보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영아반 입소 대기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보조금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수혜적 기능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가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봄.

- 2024년도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본예산은 796억 1,200만원으로 이를 전액 집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예산 및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은 '22년도 말 기준 연령별 반 개수 및 정·현원 현황을 반영하고 집행액은 '24년도 말 기준 연령별 지원 반 개수를 반영하였음.

그런데, 모든 연령반에서 예산편성시 산출한 반 개수 대비 실제 집행한 반 개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집행액에 대한

산출 없이 예산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어 집행실적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예산 및 집행내역 >

'24년 예산 내역	'24년 집행 내역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u>79,612백만원</u> · (0세반) <u>6,190개</u>×629천원×1명×12×69.4% · (1세반) <u>7,255개</u>×342천원×1~2명×12×69.4% · (2세반) <u>7,674개</u>×232천원×1~3명×12×69.4% ※ 연령별 반 개수와 지원단가 기준 인원은 '22년도 말 기준' 어린이집 반 개수 및 정원/현원 현황을 반영한 사항임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u>79,612백만원</u> · (0세반) <u>7,078개</u>×629천원×1명×12×69.4% · (1세반) <u>8,368개</u>×342천원×1~2명×12×69.4% · (2세반) <u>7,751개</u>×232천원×1~3명×12×69.4% ※ 연령별 지원 반 개수는 '24년도 말 기준'

자료: 교육부

□ 또한, 2024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 동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2024년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감소 추세가 둔화⁷⁾되었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개소당 영아반 개수, 각 연령반별 미개설된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비율 등을 통해 성과를 모니터링 중에 있다는 의견임.

< 민간·가정 어린이집 개소당 영아반 수 >

(기준: 각 연도 12월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소당 영아반 수(개)	4.1	4.2	4.4	4.5	4.7

자료: 교육부

7) 민간어린이집 전년 대비 증감률 : ('22) △8.3% → ('23) △8.6% → ('24) △7.9%
가정어린이집 전년 대비 증감률 : ('22) △12.8% → ('23) △11.7% → ('24) △10.3%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각 연령반이 미개설된 어린이집 비율 >

(기준: 각 연도 12월말, 단위: %)

구분	0세반 미개설	1세반 미개설	2세반 미개설	0세반, 0·1세 혼합반 미개설	1세반, 1·2세 혼합반 미개설	2세반, 2·3세 혼합반 미개설
2021년	44.5	31.2	27.7	21.0	10.0	27.1
2022년	38.8	30.2	28.3	18.1	9.7	27.7
2023년	34.3	26.9	29.7	16.7	8.6	28.9
2024년	30.2	23.3	24.2	14.8	8.2	23.3

자료: 교육부

□ 그러나, 동 사업의 시행 전인 2021년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개소당 영아반 수는 증가하는 추세였고, 각 연령반별 미개설된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비율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도입으로 인한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보조금 사업의 수혜적 기능을 고려하여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⁸⁾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의 운영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 구체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8) 문의: 02-6788-5192

(2) 결산개요

□ 2024년도 예산액은 1조 8,86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12억 9,400만원을 전용(증)하고 332억 5,4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증)하여, 예산현액은 1조 9,408억 5,4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함.

< 202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본예산)	내역 변경 (24.8.9.)	전용 (24.10.15.)	예비비 (24.10.2.)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계	1,886,306	-	21,294	33,254	1,940,854	1,940,854 [1,906,837]
①보육교직원 인건비	1,123,712	-	932	~~3254~~	1,157,898	1,157,898 [1,146,698]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927,625	-	932	31,053	974,915	974,915 [959,958]
- 영아전담 어린이집	38,880	-	-	217	35,081	35,081 [34,316]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52,309	-	-	550	56,534	56,534 [55,230]
- 방과후 교사	702	-	-	-	252	252 [627]
- 그 밖의 연장형 교사	68,630	-	-	663	54,475	54,475 [57,768]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35,566	-	-	771	36,641	36,641 [38,801]
②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46,170	2,846	20,362	-	269,378	269,378 [265,188]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16,725	3,006	20,193	-	239,918	239,918 [236,472]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6,430	△712	15	-	5,729	5,729 [5,420]
-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23,015	552	154	-	23,731	23,731 [23,296]

구분	예산액 (본예산)	내역 변경 (24.8.9.)	전용 (24.10.15.)	예비비 (24.10.2.)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③보조, 대체교사 지원*	486,377	△1,022	-	-	485,355	485,355 [469,762]
- 보조교사(연장교사)	427,841	62	-	-	427,247	427,247 [415,502]
- 대체교사	58,536	△1,084	-	-	58,108	58,108 [54,259]
④어린이집 운영지원*	30,047	△1,824	-	-	28,223	28,223 [25,189]
- 교재교구비	9,592	8	-	-	9,600	9,600 [9,332]
- 차량운영비	8,699	△894	-	-	7,805	7,805 [7,430]
-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	961	43	-	-	1,004	1,004 [991]
- 급식위생관리지원금	10,795	△981	-	-	9,814	9,814 [7,436]

주: ③보조, 대체교사 지원, ④어린이집 운영지원 내내역사업 예산현액은 변경내시 후 금액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 동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⁹⁾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¹⁰⁾

2024년도 예산액은 1조 8,863억 600만원이며,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 부족으로 전용을 통해 212억 9,400만원과 예비비 배정(’24.10.2.)을 통해 332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1조 9,408억 5,400만원이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① ‘보조, 대체교사 지원’ 예산 중 10억 2,200만원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18억 2,400만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내역변경하고(’24.8.9.), ②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부족분을 전용

9)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 7. (생략)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차등보조율 ± 10%)임.

(’24.10.15.)과 예비비(’24.10.2.11)) 편성을 통해 충당함.

< 202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이·전용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 변경 (’24.8.9.)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보조, 대체교사 지원	330-01	1,022	보육교직원 인건 비 및 운영지원 (1640-40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30-01	예산 편성과 실집행 간 국 고보조율 차 이, 실제 평 균호봉 미반 영된 인건비 단가 차이 등 으로 인한 인 건비, 처우개 선비 부족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어린이집 운영지원		1,824			
전용 (’24.10.15.)	가정양육수당 지원(3141-300)	330-01	21,294	보육교직원 인건 비 및 운영지원 (1640-40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30-0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부족

자료: 교육부

11)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조,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概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 2024년도 예비비 배정 일정(자료: 교육부) >

- (3~9월) 분기별 부족액 추계, 부내 이·전용 가능 예산 파악 및 기재부 실무 협의
- (9.25.)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비비 요구안 제출(교육부→기재부)
- (9.30.) 제42회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비비 편성(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대통령 재가
- (10.2.)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일반예비비 배정 통보(기재부→교육부)
- (10.21.) 변경내시 수정 통보, (11.1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교육부→시·도)

□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¹²⁾에 따라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이고, 예비비 또한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¹³⁾에 따라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임.

이에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된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해야 할 보충성을 가지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지출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12)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13)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에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 따라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법령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¹⁴⁾의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로 지급대상, 지급단가 및 국고보조율을 고려하여 사전에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편성 시 ① 국고보조율은 51.8%였으나, 실제 국고보조율은 52.8%로 국고보조율 증가분이 미반영된 점과 ②보육교직원별 인건비 지원단가에 전전년도 보육교직원별 평균 호봉을 반영하여 예산을 산출하는데, 편성 단가가 실제 단가 대비 95~96%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었고, ③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인원을 실제 지급 인원 대비 약 1만명 부족하게 산정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였다는 설명임.
- 그러나, 교직원 호봉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보육교직원 호봉변경사항 보고 등을 통해 변동추이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최근 5년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경력교사 평균호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1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이 있음(교육부 지침,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 368)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경력교사 평균호봉 >

연도별 평균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치료사	특수교사
		영아	유아			
2020년(11월)	19.9	7.9	6.9	6.7	5.9	7.9
2021년(11월)	20.7	8.4	7.5	6.9	6.5	8.8
2022년(11월)	21.1	8.8	7.8	7.0	6.8	9.6
2023년(11월)	21.6	9.1	8.6	7.0	7.3	10.4
2024년(11월)	22.1	9.5	9.6	7.1	7.6	11.2

자료: 교육부

□ 또한, 동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부족으로 2022년도에 179억원을 전용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전용(’23.11.1., ’23.12.5.)을 통해 311억 6,800만원, 예비비 배정(’23.11.29.)을 통해 292억 5,4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예산 편성 시 적정 국고보조율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대상 인원 및 단가 산출에 주의를 다하는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동 사업에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